관계부처 합동	보도자료	다시 대한민국! 새로운 국민의 나라

보도 시점	2023. 4. 27.(목) 12:00	배포	2023. 4. 27.(목) 10:00 (브리핑 11:00)

5월, 종합소득세 신고가 쉬워집니다.

- 소규모 자영업자 등 640만 명에게 모두채움 서비스 제공 -
- 수출기업·산불 피해자 등에 대해 적극적 세정지원 실시 -

□ **(안내문 발송) 국세청**(청장 김창기)은 5월 **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**을 4.27.(목)부터 5.8.(월)까지 모바일·서면으로 **발송**합니다.

○ '22년도에 **종합소득**이 있는 **개인**은 올해 5.31.(수)까지 **종합소득세**와 **개인지방소득세**를 **신고·납부**해야 합니다.

○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**홈택스**(PC)·**손택스**(모바일 앱)·ARS **전화**를 이용하여 **세무서 방문 없이** 쉽고 편리하게 전자신고 하시기 바랍니다.

□ **(모두채움 확대)** 올해는 세무서 방문 없이 **쉽고 편리**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도록 **모두채움 서비스**를 **확대**하고 **홈택스 화면**을 **단순**하게 개선하였습니다.

○ ❶**소규모 자영업자**뿐만 아니라 ❷근로소득 이외에 **다른 소득이 있는 직장인**, ❸**주택임대소득자**, ❹**연금 생활자**, ❺배달라이더·대리운전기사·간병인 등 **총 640만 명**의 납세자에게 **모두채움 서비스**를 **제공**합니다.

○ 특히, 배달라이더·대리운전기사·간병인 등 **인적용역 소득자 400만 명**에게 **모두채움 환급 신고 안내문**을 **발송**합니다.(**환급액 8,230억 원**)

○ 모두채움 대상자는 ARS **전화**(☎ 1544-9944) **한 통**으로 **간편**하게 **신고**를 마칠 수 있습니다.

□ **(신고화면 개편)** 세금을 잘 모르는 납세자도 본인의 **홈택스 신고화면**으로 **이동**할 수 있는 「**바로가기 화면**」을 제공하고 **신고화면**도 **간결**하게 개편하였습니다.

□ **(수출기업 등 세정지원) 수출기업·산불 피해 납세자**가 **유동성**을 적기에 **확보**할 수 있도록 **납부기한**을 8.31.(목)까지 **납세담보 없이 직권 연장**합니다.

○ **영세 자영업자** 등이 **납부기한 연장**을 **신청**하는 경우에도 **적극 지원**합니다.

□ **(개인지방소득세)** 신고·납부 기간과 대상은 종합소득세와 같으나, 납세자는 **지방자치단체(시·군·구)에 별도로 신고·납부**해야 합니다.

○ 행정안전부는 올해부터 **국민비서(구삐)**를 활용하여, **개인지방소득세 미납자**에게 **납부세액계좌** 등 **개인별 맞춤형** 모바일 **안내**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
1 ’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· 납부 안내

□ (신고기간) ’22년도에 **종합소득**이 있는 개인은 **올해** 5. 31.(수)까지 **종합소득세**와 **개인지방소득세**를 **신고·납부**해야 합니다.

○ **성실신고확인 대상자***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**올해** 6. 30.(금)까지 **신고·납부**해야 합니다.

* 업종별 ’22년 귀속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(소득세법 §70의2)
①도·소매업 등 15억 원, ②제조업·음식업 등 7.5억 원, ③임대업·서비스업 등 5억 원

□ (신고대상 안내) **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**에게는 4.27.(목)부터 5.8.(월)까지 **안내문**(모바일 또는 서면)을 보내드립니다.

□ (신고방법) **홈택스**(PC) 또는 **손택스**(모바일 앱)를 통해 **쉽고 편리하게 전자신고** 할 수 있으며, **모두채움** 신고 대상으로 안내받은 경우 **ARS 전화**(☎ 1544-9944) 신고도 가능합니다.

○ 종합소득세 신고가 집중되는 **5월 한 달 동안** 홈택스 · 손택스 **운영 시간***을 **오전 1시까지 연장**합니다.(ARS 신고는 오후 24시까지만 운영)

* ①**5.1.~5.30.** 매일 06:00 ~ 다음날 01:00, ②**5. 31.**(신고 종료일) 06:00 ~ 24:00

□ (납부방법) 소득세 신고 시 안내받은 **계좌번호**로 **이체**하거나, **홈택스 · 손택스**에서 **신용카드 · 간편결제** 등으로 납부 가능합니다.

* 신용카드 납부대행 수수료(납부세액의 0.8%, 체크카드는 0.5%)는 납세자가 부담

□ (동영상 제공) 종합소득세 신고 · 납부와 관련하여 보다 더 **자세한 내용**이 궁금한 경우 **국세청 누리집***에서 제공하는 **안내 동영상** 등을 **참고**하시기 바랍니다.

* 국세청 누리집 > 국세신고안내 > 개인신고안내 > 종합소득세

2 쉽고 편리한 납세 서비스 제공

□ 국세청은 「**국세행정 역량강화 TF**」 활동을 통해 **영세사업자**와 **세무 경험이 많지 않은 납세자**에 대한 **모두채움 서비스**를 **확대**하고, **홈택스** 신고화면을 **쉽게 개편**하였습니다.

모두채움 서비스* 확대

* 국세청에서 납부(환급) 세액을 미리 계산하여 제공한 신고 안내문

□ **(모두채움 대상 확대)** 올해는 **근로소득**과 **다른 소득**(연금 · 기타소득)이 **함께 있는 근로자** 등을 추가하여 **총 640만 명**의 납세자에게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
○ 모두채움 서비스 **대상**은 ❶**단순경비율**이 **적용***되는 **소규모 사업자**와 ❷**사업소득이 아닌 다른 소득**(근로 · 연금 · 기타소득)이 발생한 납세자입니다.

* (도·소매업 등) 6천만 원 미만, (제조업·음식업 등) 3.6천만 원 미만, (임대·서비스업 등) 2.4천만 원 미만

□ **(신고방법)**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**ARS 전화**(☎ 1544-9944) **한 통**으로 **간편**하게 **신고**를 마칠 수 있습니다.

○ ARS 전화 신고 후에는 소득세 신고가 **"정상적으로 접수"** 되었음을 **알리는 문자 메시지**가 **발송**됩니다.

| 사례 : 모두채움 서비스를 이용한 종합소득세 신고 |

- **(학원강사 A)** 생애 처음으로 학원강사 아르바이트를 하여 소득을 얻은 A는 국세청에서 안내한 모두채움으로 간편하게 소득세 신고를 마칠 수 있었음
- **(강연소득을 얻은 B)** 회사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였으나, 일시적인 강연소득이 있어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려고 준비하던 B는 국세청에서 안내한 모두채움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었음
- **(새로운 직장으로 이직한 C)** 이직을 하였으나 현재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C는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알았으나 신고 방법을 몰라 고민하던 중 국세청에서 안내한 모두채움 서비스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었음

□ **(인적용역 소득자 환급)** 배달라이더 · 대리운전기사 · 행사도우미 · 학원강사 · 간병인 등 **인적용역 소득자 400만 명**에게(**환급액 8,230억 원**) 「**모두채움**(환급)」 **안내문**을 발송합니다.

○ 환급 대상 인적용역 소득자들은 **ARS 전화 한 통**으로 **환급***받을 수 있습니다.(홈택스 · 손택스도 이용 가능합니다.)

* 인적용역 소득자는 회사로부터 소득을 지급받을 때 3.3% 세금을 원천징수로 납부하며, 이 금액이 실제 부담해야할 세금보다 많은 경우 환급금이 발생

□ **(안내문 발송)** 모두채움 대상자에게는 5.1.(월)부터 5.5.(금)까지 **모바일**(만 65세 미만) · **서면**(만 65세 이상) **안내문**을 순차 발송하며, **홈택스 · 손택스**에서도 5. 1.(월)부터 확인*할 수 있습니다.

* 안내문 후면의 QR코드를 스캔하거나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신고유형 확인 가능

| 예시 : 모두채움 안내문 |

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·지방소득세 신고 안내문 모두채움(납부)

_____ 님, 안녕하십니까.

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미리 계산하여 안내해 드립니다.

	종합소득세(세무서)	개인지방소득세(지방자치단체)
납부할 세액	원	원

아래 방법에 따라 5월 31일까지 ARS 전화(☎1544-9944)로 신고 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.

○ 공제항목 추가 등 **수정사항이** 있는 경우에는 홈택스·손택스에서 **수정할 수 있으며**, 자세한 사항은 **안내 동영상***을 **참고**하시기 바랍니다.

* URL(모바일)·QR코드(서면)로 안내문에 제공하여 별도 검색 없이 영상 확인 가능

홈택스 이용 편의 제고

□ **(접근경로 단순화)** 세금을 잘 모르는 납세자도 본인이 신고해야 하는 화면으로 **곧바로 찾아갈 수 있도록** 「**바로가기 화면**」을 운영합니다.

○ ❶납세자는 **홈택스**에 **로그인** 후 ❷국세청으로부터 안내받은 **신고 유형**을 **확인**하고 ❸작성이 필요한 **신고화면**으로 **바로 이동**할 수 있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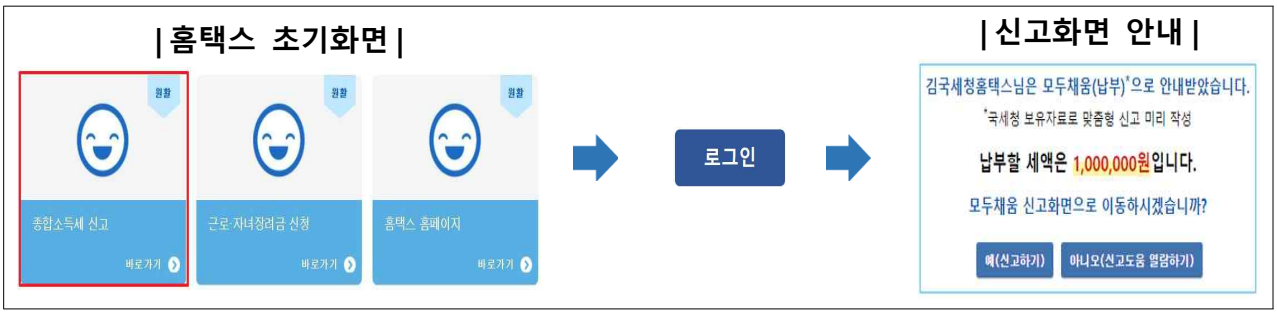

□ **(신고화면 개선) 모두채움 서비스 대상자**가 홈택스·손택스에서 소득금액 및 공제·감면 **세부 내역**을 **한 번**에 **확인**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

□ **(화면 간소화)** 서식기반의 **복잡한 항목**을 **단순화**하고 **불필요한 내용**은 과감히 **삭제**, 신고자가 꼭 필요한 내용만 **직관적**으로 **구성**하였습니다.

□ **(오류 사전예방)** ❶**실시간**으로 **계좌 유효성**을 **검증**하는 기능, ❷**중복 신고서 자동 삭제** 기능*을 제공하여 신고 오류로 인한 **환급** 등 **지연 문제**를 **사전**에 **예방**하였습니다.

* 본인 명의 신고서가 중복 접수된 경우 가장 나중 접수된 신고서만 인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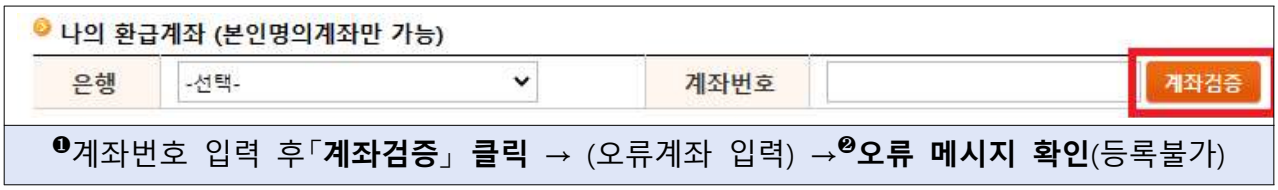

❶계좌번호 입력 후「**계좌검증**」**클릭** → (오류계좌 입력) →❷**오류 메시지 확인**(등록불가)

모바일 신고 안내 확대

□ **(모바일 안내 확대) 모바일 서비스**에 대한 **수요**가 **높은** 현실을 반영하여, 종합소득세 안내문 발송 방식을 **모바일 중심**으로 **개편**하였습니다.

○ **만 65세 미만**의 납세자에게는 **모바일 안내문**을 **발송**하고, **만 65세 이상 어르신** 및 **모바일 발송 실패자**에게는 **서면 안내문**을 **발송**합니다.

□ **(화면 개선) 모바일** 화면을 **항목별 탭(TAB) 형식**으로 구성하여 화면을 아래위로 이동하는 불편 없이 **편리**하게 **확인**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

□ **(발송 일정)**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에게는 4.27.(목)부터 5.8.(월)까지 **카카오톡** 또는 **문자 메시지**로 **안내문**을 **순차 발송***합니다.

* 카카오페이 가입자에게는 카카오톡으로, 미가입자에게는 문자 메시지로 안내문 발송

○ 안내문에서 제공하는 **바로가기 링크**(ARS · 손택스)를 이용하면 **간편**하게 **신고**를 마칠 수 있으니 **모바일 안내문**을 **반드시 확인**하시기 바랍니다.

| 모바일 안내문 확인 방법 |

❶**하단**에 위치한「**열람하기**」버튼을 누르고 → ❷안내문을 **열람**한 후 → ❸신고하기 **링크**(ARS·손택스)를 **연결**하여 **종합소득세 신고**를 마칩니다.

3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세정지원

□ (추진배경) 국세청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**수출 부진** 및 **산불 피해**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한 **세정지원**을 실시합니다.

□ (납부기한 직권연장) **수출기업 · 산불 피해 납세자**가 **유동성**을 적기에 **확보**할 수 있도록 **종합소득세 납부기한**을 8. 31.(목)까지 **직권 연장**합니다.

○ **납부기한 직권연장** 대상자는 **납세담보**를 **제공하지 않아도** 됩니다.

*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(2개월 연장): '23. 6. 30.(금) → '23. 8. 31.(목)

**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자도 납세자가 원하는 경우 5. 1.~8. 31. 사이에 언제든 납부 가능

○ **납부기한**이 **직권연장** 되는 것이므로 **신고기한 내**에 종합소득세 **신고**를 **해야 합니다.**

○ 대상자에게는 **연장된 납부기한**이 기재된 **안내문**을 발송하며, 홈택스·손택스 「**신고도움 서비스**」에서 **직권연장 여부**를 **확인***할 수 있습니다.

* **[홈택스]** 신고/납부 > 세금신고(종합소득세) > (화면우측) 「신고도움서비스」 > 기본사항
[손택스] 신고납부 > 종합소득세 >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 > 기본사항

대 상	요 건(기한 내 신고자만 해당)
□ **수출기업**	· ①'22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**50% 이상**이고 **매출과표 5억 원** 이상이거나 ②**관세청·KOTRA**가 **선정**한 수출 관련 개인사업자 - 다만,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자는 제외
□ **산불피해**	· **전국적 산불**('23년 4월)로 인해 **특별재난지역**으로 선포된 지역*에 **주소지**를 두고 있는 **납세자** * [대전] 서구, [충북] 옥천군, [충남] 홍성군 · 금산군 · 당진시 · 보령시 · 부여군, [전남] 함평군 · 순천시, [경북] 영주시, [강원] 강릉시

□ (신청에 의한 연장)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납세자도 경영상 어려움으로 **기한연장**(신고·납부)을 **신청***하는 경우 **적극 지원**합니다.

* **[홈택스]** 신청/제출 > 주요세무서류신청바로가기 >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신청 등
[손택스] 신청제출 > 세무서류신청-공통분야 >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 신청 등

○ **영세 자영업자**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**최대 1.5억 원**까지 **납세담보 제공**을 **면제**합니다.

4 납세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 신고도움 자료 제공

□ (안내자료 제공) 국세청은 **빅데이터 분석**을 통해 **성실신고**에 도움이 되는 **납세자별 맞춤 정보**를 **홈택스 · 손택스** 「**신고도움 서비스***」에서 제공합니다.

* **[홈택스]** 신고/납부 > 세금신고(종합소득세) > (화면우측) 「신고도움서비스」
[손택스] 신고납부 > 종합소득세 >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

| 신고도움 서비스 화면 구성 |

기본사항	신고시 유의할 사항	신고 안내자료	신고상황 종합분석	주택임대소득 참고자료
· 신고안내유형 · 기장의무 · 납부기한 연장여부	· 개인별 유의 사항 · 업종별 유의 사항 · 동일사업자평균소득률 (업종·수입금액·지역)	· 사업장별수입금액 · 기납부세액 · 소득·세액공제 항목 · 신고시 적용할 가산세	· 최근 3년간 종합소득세 신고상황 · 매출액 대비 주요 판관비율 분석	· 주택임대 수입금액 · 국내 주택보유 내역

□ (성실신고 사전안내) 국세청 · 외부 자료를 **빅데이터 분석**하여 납세자들이 **놓치기 쉬운 항목**에 대해 납세자 **맞춤형 성실신고 사전안내**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

○ 「**신고시 도움이 되는 사항 안내**」 안내문을 받으신 납세자께서는 신고에 **참고**하시기 바랍니다.

○ 신고 후에는 「**신고시 유의할 사항**」 **반영 여부**를 **분석**하여 「**신고 내용 확인**」을 실시할 예정이니 **성실**하게 **신고**해주시기 바랍니다.

| 사례 : 성실신고 사전안내를 활용한 종합소득세 신고 |

- **(국외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한 A)** 해외에 소재한 부동산에서 임대소득을 얻은 A는 국세청에서 보내준 「신고시 유의할 사항」을 확인한 후, 본인의 국외발생 소득을 잊지 않고 합산하여 신고할 수 있었음
- **(특허권을 양도한 B)** 특허권을 양도하여 일시적 소득이 발생하였으나 소득신고 의무를 몰랐던 B는 국세청에서 안내한 내용에 따라 기타소득을 신고할 수 있었음

5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관련

□ **(신고개요)** 5월 한 달간 종합소득세(국세)를 신고·납부하는 납세자는 **개인지방소득세**(지방세)도 **지방자치단체에 신고·납부**해야 합니다.

○ 개인지방소득세 신고·납부 **기간**은 **종합소득세와 동일**하게 5.1.~5.31.이고, **성실신고확인 대상자**의 신고·납부 기간도 5.1.~6.30.으로 **동일**합니다. **환급** 대상자의 경우 **종합소득세 환급 후 4주 이내**에 개인지방소득세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.

□ **(신고방법)** 행정안전부는 국세청과의 협업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납세자에게 신고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 **모두채움 안내문**에는 **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세액(환급세액)**과 **납부방법**을 함께 **안내**하고 있으며, **전자신고*** 시 자료가 자동으로 **연계**되어 **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한번에 신고**할 수 있습니다.

* 국세청 홈택스(www.hometax.go.kr)와 지자체 위택스(www.wetax.go.kr) 실시간 연계, 운영시간도 동일하게 연장(①5. 1.~30.은 오전 1시까지, ②5. 31.은 오후 24시까지)

○ **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**는 안내문에 기재된 **개인지방소득세 가상계좌로 납부만 하면 신고로 인정**됩니다. 또, 전국 228개 **자치단체**(시·군·구)에 **신고창구**를 설치하여 **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한번에 신고**할 수 있습니다. **고령자·장애인** 등 신고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, 가까운 자치단체 **신고창구(주소지 무관)**에서 **도움**을 받을 수 있으며 신고창구 **위치**는 **위택스에서 검색**이 가능합니다.

○ **전자신고**의 경우, **홈택스** 또는 **손택스**(모바일 앱)에서 **종합소득세 신고** 후 **'지방소득세 신고이동'**을 클릭하면 **위택스**로 한번에 이동하여 **개인지방소득세**까지 **신고**가 가능합니다.

* ①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> ② 지방소득세 신고이동 클릭 > ③ 위택스 이동

○ **전자신고** 시 도움이 필요하거나 **개인지방소득세 신고·납부**와 관련된 **문의** 사항이 있다면, 신고기간 운영하는 **개인지방소득세 전담 콜센터**(1661-6800)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□ **(납부방법)** 전자신고 시 **위택스**(PC)나 **스마트 위택스**(모바일 앱)에서 **전자납부**가 가능하고, **가상계좌**를 통한 **무통장 입금**도 가능합니다. 또한 **은행 자동화기기***를 이용하면 납부서 없이도 납부가 가능합니다.

* 현금지급기(CD) 및 현금자동입출금기(ATM)는 본인명의 통장·카드 필요

□ **(납세편의)** 행정안전부는 납세자의 편의 제고를 위해 올해부터 **개인별 맞춤형 모바일 안내** 및 **분할납부**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
○ **국민비서(구삐)** 서비스*를 활용하여, **개인지방소득세 미납자**에게 **납부세액·계좌 등 개인별 맞춤형** 모바일 **안내**를 제공합니다. 또한, 납부할 세액이 **1백만원**을 **초과**하는 경우 **분할납부 신청**도 **가능**합니다.

* 민간 앱 14종 활용: 카카오톡·네이버·토스·KB 스타뱅킹·신한 플레이·하나원큐·우리WON뱅킹 등

○ 종합소득세 **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자** 및 **기한연장 신청 승인자**에 대해서도 **별도의 신청 없이** 개인지방소득세 납부(신고)기한을 **동일하게 연장**해 드립니다.

□ 앞으로도, **다양한 납세편의 제도**를 발굴하고, **국세청**과 **긴밀한 협업**을 통해 납세자의 신고·납부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
담당 부서 <총괄>	국세청 소득세과	책임자	과 장	전지현 (044-204-3241)
		담당자	사무관	안경민 (044-204-3252)
<협조>	국세청 홈택스2담당관	책임자	과 장	이준목 (044-204-2551)
		담당자	사무관	김경선 (044-204-2552)
<협조>	국세청 빅데이터센터	책임자	과 장	남우창 (044-204-4501)
		담당자	사무관	박창오 (044-204-4512)
담당 부서	행정안전부 지방소득소비세제과	책임자	과 장	진선주 (044-205-3871)
		담당자	사무관	이유경 (044-205-3883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